

대전지방법원 2018. 5. 18 선고 2017나11302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8. 5. 18 선고 2017나113028 판결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9. 14 선고 2016가단22335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4. 27

판결 선고 2018. 5. 18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9. 14. 선고 2016가단2233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대 317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8, 13내지15, 1, 16내지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59.4㎡(1)를 인도하라[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'충남 부여군 D 대 317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내지 9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㎡'를 제외한다. 이하 '이 사건 (ㄴ)부분 토지'라 하고,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 부분을 '이 사건 다 부분 토지'라 한다]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.

제1심법원은 그중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,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한정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의 면적이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21㎡가 아니라 59.4㎡라고 거듭 주장하면서,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.

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

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(ㄴ)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부분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송호철 판사 이해선

1)제1심 판결은 이 부분 면적을 별지 참고도 표시에 따라 21㎡로 기재하였으나,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.